

1995. 3. 21.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주시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충주시도로복구원 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개발위원회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3. 15.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3. 15.

다. 상정일자 :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1995. 3. 21.)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수도과장)

가. 제안이유

충주시와 증원군 통합으로 종전 「증원군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읍·면의 상수도와 온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안 제1조)
- 세입은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급수료, 사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수입으로 함. (안 제2조)
- 세출은 운행관리 및 기타 잡비의 지출로 함. (안 제3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회계를 설치함은 타당하며,

○ 본 조례의 내용 검토 결과

- 부칙 제2조(폐지조례)는,

-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의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라는 문안을 서두에 삽입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타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적용범위를 규정한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3조(급수구역)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보면 충주시 관내 전지역의 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온천사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므로, 본 조례와 중복되므로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하여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본 의회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 정비특위에서 검토 처리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입안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의요지 : - 부칙 제2조에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116호)는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충주시 읍.면.동에 대한 별도 특별회계가 있는가 ?
 - 충주시 관내 등지역에 온천지구 개발이 될 시는 ?
 - 온천수 사용료는 누가 정하나 ?

- 답변요지 :
- 충주시로 돼 있던 상수도가 특별회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분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지역에 온천지구가 개발될 시는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 온천수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이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요금을 받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조례안의 부칙 제2조(폐지조례)증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116호)는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116호)는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블임

- 충주시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 충주시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충주시 조례 제 116호

충주시읍·면 상수도 및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특별회계 설치) 읍·면 지역 상수도 및 온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읍·면 상수도 및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이하 "본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 본회계는 읍·면 상수도 및 온천수 급수료, 사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① 본회계 운영관리비 및 기타 잡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본회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충주시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11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업무처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안 제2조(폐지조례)중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116호)는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온천수관리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제116호)는 이를 폐지한다」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 - 제4조 (생략)</p> <p>부칙</p> <p>제1조 (생략)</p> <p>제2조(폐지조례) <u>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u> <u>(제116호)</u>는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 (생략)</p>	<p>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u>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116호)</u>는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 (현행과 같음)</p>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3. 15.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3. 15.

다. 상정일자 :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1995. 3. 21.)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도로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하므로서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담금등 징수 (조례 제3조)

- 도로굴착허가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조례 제4조)

- 복구 표준단면에 의해 복구금액 산출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복구

○ 복구공사시행 (조례 제5조)

-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체결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 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

○ 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 (조례 제6조)

- 사안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하거나 추정

○ 준수사항 (조례 제7조)

- 글자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을 이행

○ 복구원인자 확인 (조례 제9조)

-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를 확인·추적하여 부담금 추정
→ 긴급복구 필요시 우선 자체복구후 확인·추적하여 부담금 추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법적합성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내지 68조 및 동법 78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그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규정되었고,

○ 조례내용 검토결과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2항중 원인자 부담금을 「추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추정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징수를 통칭하는 단어로써 "추정"을 "징수"로 바꾸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별다른 부적합성을 발견치 못하였음.

○ 타 조례와의 관계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당시의 타 조례와 연계되는 사항이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질의요지 :
 - 조례내용상 도로훼손하는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정수하는 것인가 ?
조례 제5조에 보면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 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제정이유와 제5조의 내용이 맞지 않음.
 - 조례증 제9조에 "주장"을 "정수"로 하는 것이 내용상 맞는 것이 아닌가 ?

- 답변요지 :
 - 상위법에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국가 등 농지개량조합은 직접 복구할 수가 있음.
 - 도로법상 예치금 제도가 있으며 국가,정부투자기관인 농지개량조합 등의 경우는 복구자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됨.
 - "주장"을 "정수"로 수정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 요지

- 안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2호증 "주장"하여야 한다를 "정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별 임

-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정수조례(안)

-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동"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공작물·부속물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 3 조 (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율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제 5 조 (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미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 7 조 (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9 조 (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 원인자와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주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후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卷之三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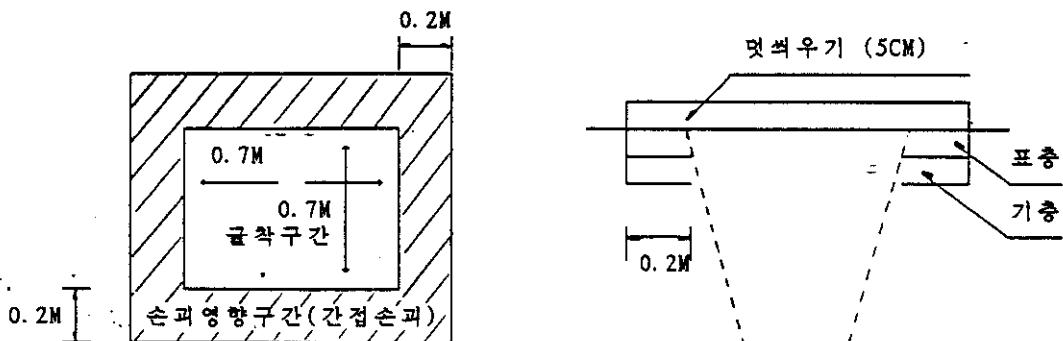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기준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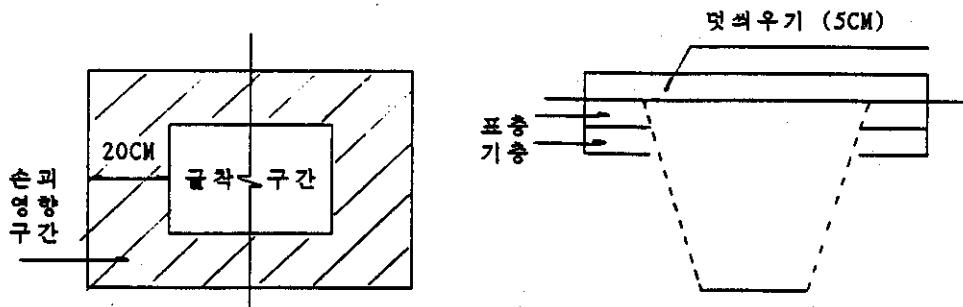
-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 \times 0.7M$ 로 계산한다.
-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매우기+보조기충+전압+기충+포충+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기충+포충+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 그림 1 >

나. 굴착깊이 2.0M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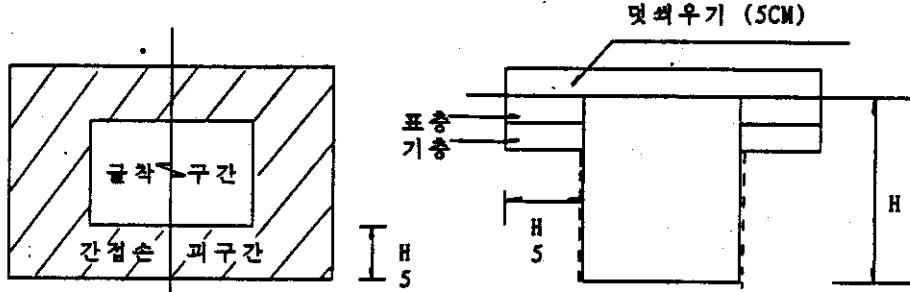
-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준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2)와 같다.
- (3)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시 칫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30CM 까지의 범위를 손괴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 (그림 2)
-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 그림 2 >

다. 글착깊이 2.0M 이상

- (1) 글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2)에 의한다.
-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글착경계로부터 사방 $H/5$ 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기층+표층+덧 죄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글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깃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손괴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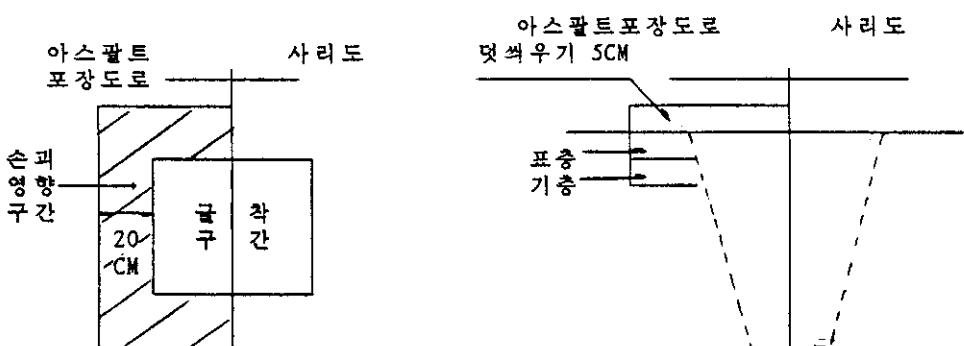
< 그림 3 >

라. 소규모 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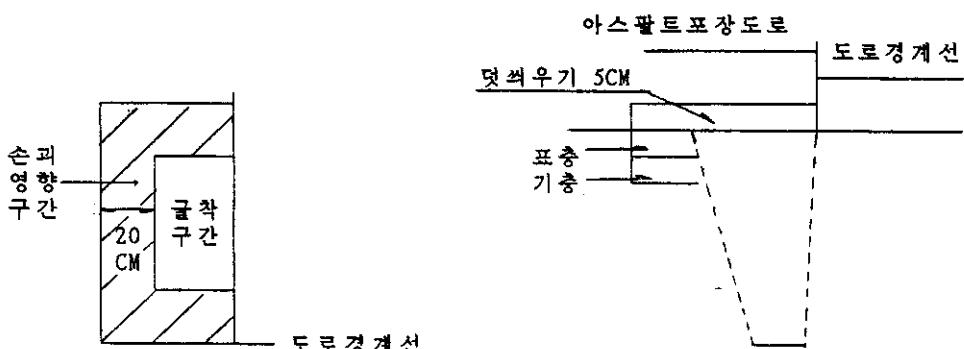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 없이 글착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글착

-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글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글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을 적용하며, 사리도구간은 「되매우기+보조기충+전압+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 (2) 간접손괴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CM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4 및 그림5)
-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2)를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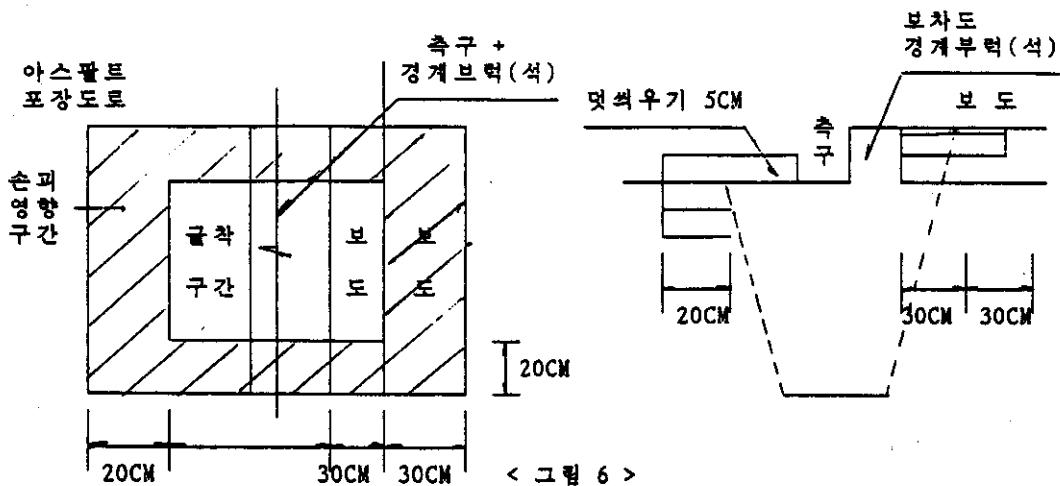


< 그림 4 >



< 그림 5 >

- (4)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축구 글착시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 정수는 나목(3)과 같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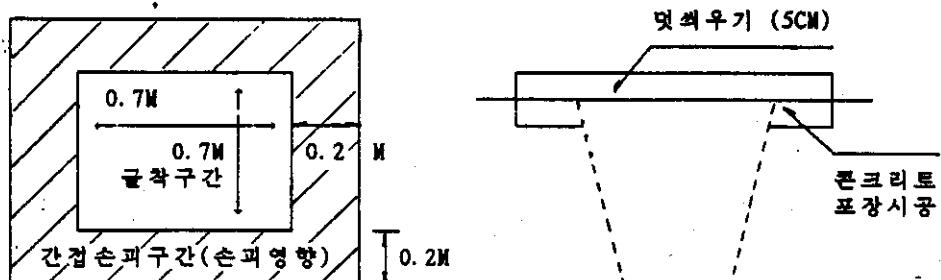


< 그림 6 >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글착할 경우

가. 최소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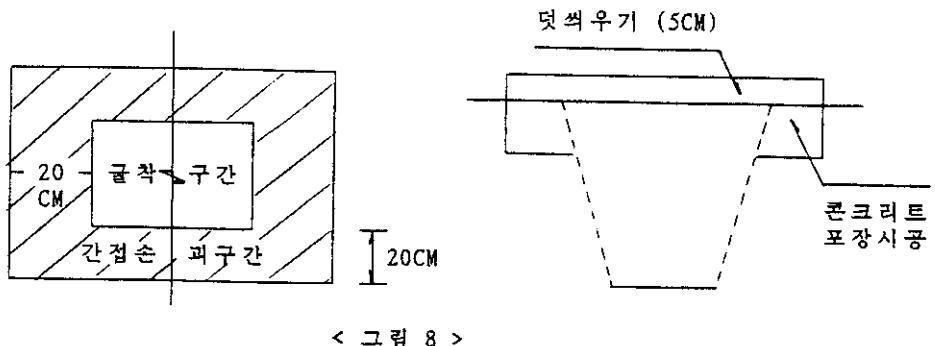
- (1) 도로글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 \times 0.7M$ 로 계산한다.
- (2) 직접손피구간의 복구면적은 글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보조기충+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 (3) 간접손피구간의 복구비용은 손피영향구간(글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7)



< 그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글착

- (1) 도로를 글착함에 있어서의 글착면적 및 간접손피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2) 간접손피구간의 복구비용은 별도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림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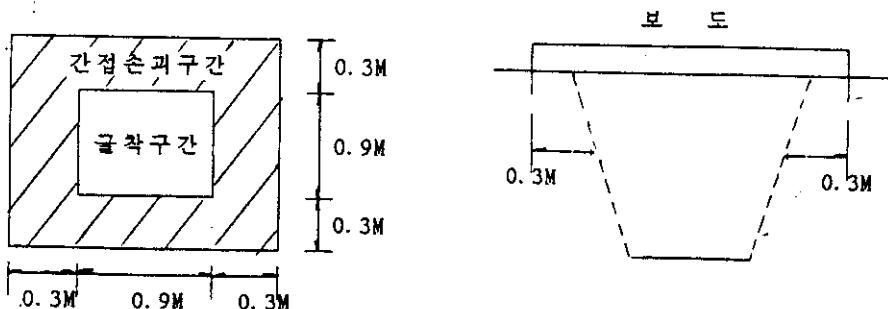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과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3)의 방법에 의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9 \times 0.9M$ (보도보판 1장:30CM적용)로 계산한다.
- (2) 직접손과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퇴메우기+보조기 층+전 암+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3) 간접손과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 암+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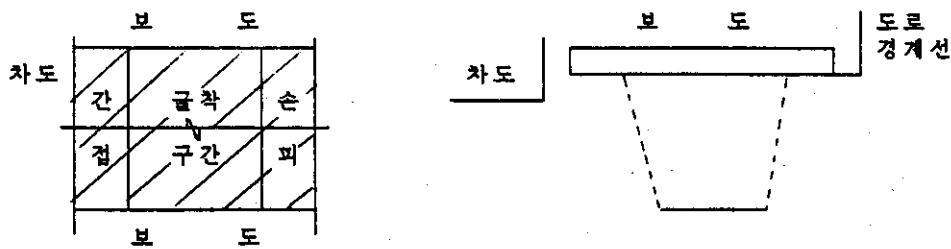


< 그림 9 >

나. 보도를 중방향으로 글착할 경우

- (1) 보도를 글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보도폭이 3M 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별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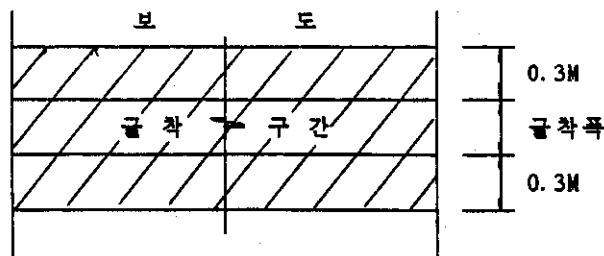
< 그림 10 >

- (3) 보도폭이 3M 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2). (3). (4)에 의한다

다. 소규모 글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글착폭을 $0.9 \times 0.9M$ 로 계산할수 있으며, 간접손피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3)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글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피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가목 (2). (3). (4)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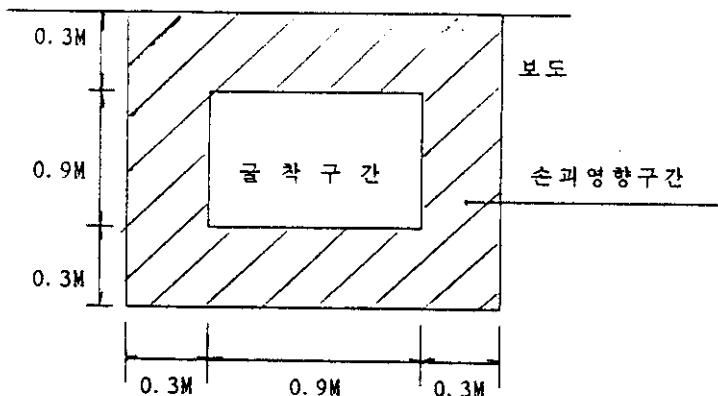
< 그림 11 >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글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등)

-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글착할 때에는 글착면적은 $0.9M \times 0.9M$ 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글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비율은 별표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차도경계블럭(석)



< 그림 12 >

4. 보차도 경계블럭(석), 도로 경계블럭(석), 축구, 기타 도로 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 별표 2 】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종 별	적용법위	적 용 단 면	적 용 단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	지 방 도 이하도로	덧씌우기: 5 CM 표 층: 5 CM 기 층: 10 CM 보조기층: 50 CM (동결심도유지)	복구설계에 의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	지 방 도 이하도로	덧씌우기: 5 CM 콘크리트: 20 CM 보조기층: 45 CM (")	"
	일 반 보도블럭	일반 보도블럭: 6 CM 모 래: 3 CM 보 조 기 층: 50 CM	"
	소 형 고압블럭	소형 고압블럭: 7 CM 모 래: 3 CM 보 조 기 층: 50 CM	"
	온나멘트 타	온나멘트 타일: 4.5 CM 모르타트(1:3): 5 CM 모 래: 3 CM 보 조 기 층: 50 CM	"
	투 수 성 아 스 콘	투수성 아스콘: 3 CM 기 층: 10 CM 모 래: 5 CM 보 조 기 층: 50 CM	"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
사 리 도		사 리 부 설: 10 CM 보 조 기 층: 50 CM	"
기타 도로 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별표 3 】

도로굴착 및 복구시 유의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재의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5CM로 하여 충분한 충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장도로 굴착시는 카타기를 이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후 굴착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시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 ~ 05:00)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 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후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시에는 굴착 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자침(건설부)과 설계도서등에 부합 되도록 시행 하여야 한다.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수정(안)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증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2항증 "부담금 추정"을 "부담금 정수"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 - 제8조 (생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생략)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주 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u>추정</u> 하여야 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정수 - - -.
제10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같음)